

통상자문센터 News Letter | 2024. 4. 30.

[포커스 칼럼] 유럽연합이 추진하는 '지속가능성제표'는 국제거래를 어떻게 바꿀까?

임성택 대표변호사(지평 ESG센터장)

기업이 지속가능성제표를 공시해야 하는 시대가 왔다. 지속가능성제표는 유럽연합 지속가능성 공시의 요구문서이다. 재무제표에 상응하는 것이다. 유럽연합은 2023년 12월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이행 가이던스를 발표하였다. 유럽의 지속가능성 공시제도는 우리 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국제거래와 가치사슬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한국 기업은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

유럽의 지속가능성 공시법규

유럽은 가장 일찍 비재무 공시를 의무화한 뒤 이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2014년 「비재무 공시지침」(Non-Financial Reporting Directive, 이하 'NFRD')을 법규화했다(2017년 회계연도부터 적용). 2019년에는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지속가능금융 공시규정」(Sustainable Finance Disclosure Regulation, 이하 'SFDR')도 채택했다. 이후 NFRD를 강화하는 「기업 지속가능성 공시지침」(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 이하 'CSRD')을 입법했다. CSRD는 2022년 11월 유럽의회의 승인을 얻어 2023년 1월 6일부터 발효되었다. 비재무 공시의 항목들도 재무적 관련성을 가지므로 '지속가능성 공시'라는 개념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유럽연합은 2023년 7월 CSRD 이행을 위하여 「유럽 지속가능성 공시기준」(European Sustainability Reporting Standards, 이하 'ESRS')을 채택하였다. 일종의 시행규칙인 셈이다.

[그림] 유럽연합 지속가능성 공시제도 타임라인



※ 자료: ESMA(2022), Deloitte(2022)

CSRD가 한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

CSRD는 2024년 회계연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역내 중소기업에도 적용되고, 역외 기업도 일정기준을 충족하면 적용된다. 적용기업 수가 약 5만 개에 이른다. 한국 기업 중에도 상당히 많은 기업이 이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

	적용시기	공시대상	비고
1	2025년(2024회계연도)	기존 NFRD 적용기업	직원 수 500명 이상 EU 상장사, 금융기관(은행, 보험회사)
2	2026년(2025회계연도)	EU 내 대기업(비EU 기업을 지배기업으로 하는 EU 내 종속기업 포함)	아래 기준 중 2개 이상에 해당하는 회사(상장 여부와 무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원 250명 초과 - 자산 2천만 유로 초과 - 순매출 4천만 유로 초과
3	2027년(2026회계연도)	EU 내 상장중소기업	초소형 상장기업은 제외(중소기업을 위한 지속가능성 보고 기준에 따라 공시)
4	2029년(2028회계연도)	EU 내 일정 매출액을 초과하는 비EU 지배기업	EU 역내 순매출이 1억 5천만 유로를 초과하며, 역내에 자회사 또는 지사를 두고 있는 제3국기업(자회사에는 위 2, 3의 대기업, 중소기업 기준 적용, 지사에는 순매출액 4천만 유로 초과 기준 적용)

우선 EU 역내에 직원 250명 초과, 자산 2천만 유로 초과, 순매출 4천만 유로 초과 중 2개 이상에 해당하는 현지법인이 있는 경우 2025년 회계연도부터 공시하여야 한다. EU 역내 순매출이 1억 5천만 유로를 초과하며, 역내에 자회사 또는 지사를 두고 있는 제3국기업은 2028년 회계연도부터 공시를 하여야 한다. 한국본사도 CSRD에 따라 공시해야 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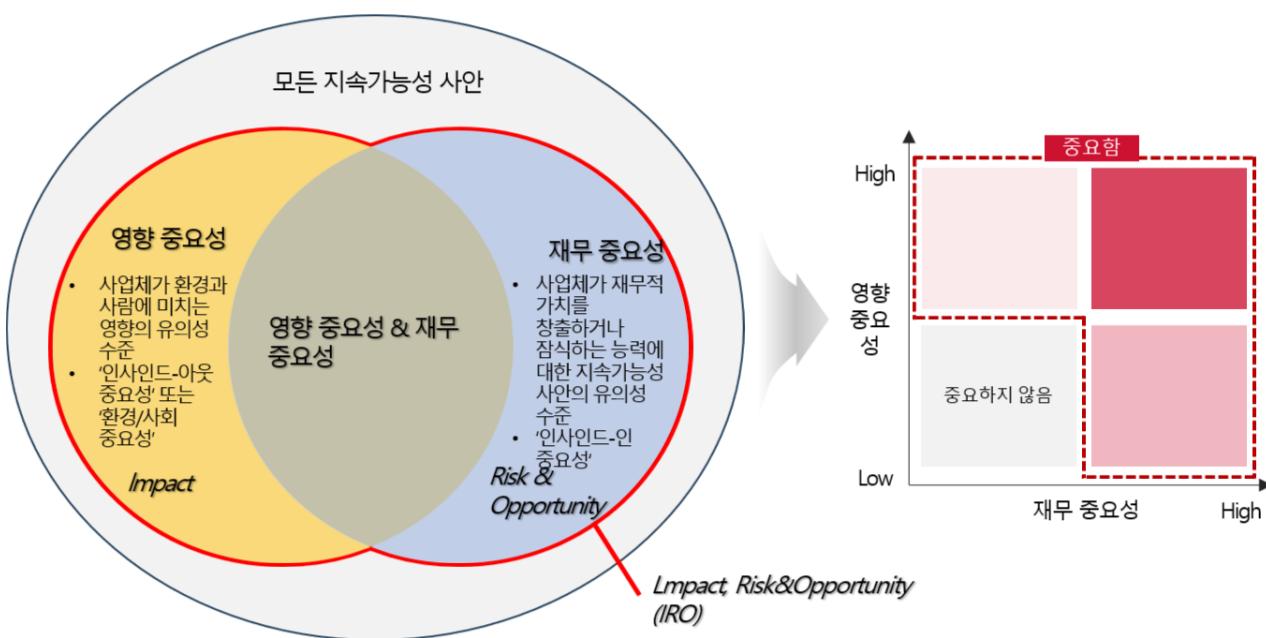
공시를 하지 않는 등 CSRD를 위반하는 경우 제재를 받을 수 있다. CSRD에서는 효과적이고 비례적이며 설득력이 있는 제재를 요구할 뿐 제재의 내용은 각국에 위임되어 있다. NFRD 당시 독일의 경우 최대 1,000만 유로 또는 연간 총 매출액의 5% 중 높은 금액, 취득한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하는 입법을 했다. 처음으로 CSRD 이행입법을 한 프랑스의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75,000유로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다.

비록 유럽에 자회사나 지사를 두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유럽기업과 거래하는 경우 공시의무의 영향을 받게 된다. 공시의 대상에 가치사슬도 포함되기 때문이다. 공시의무자는 가치사슬의 인권, 환경 등 사안에 대하여 부정적 영향과 위험, 기회 등을 공시하여야 한다. CSRD는 이른바 스코프3(scope3)를 공시범위에 포함시켰다. 스코프3는 협력업체와 물류는 물론, 제품 사용과 폐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의미한다. 이처럼 유럽과 거래하는 회사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 밖에도 CSRD는 사안의 중요성 평가를 하거나 기업이 환경과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관리함에 있어서 실사(Due Diligence)를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공시대상 기업은 가치사슬에 있는 회사를 상대로 인권실사 및 환경실사를 실시하고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유럽과 거래하는 한국 기업들도 인권 및 환경 실사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중 중요성

공시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중요성 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 중요한 사안과 문제를 식별하는 과정이다. 지속가능성 공시 와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두 가지 기준이 존재한다. 하나는 '영향 중요성'이고(GRI), 다른 하나는 '재무 중요성'이다(TCFD 와 ISSB). 그런데 EU CSRD는 두 가지를 포함하는 '이중 중요성'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 자료: GRI, GREENOMY

<https://www.globalreporting.org/media/r2oojx53/gri-perspective-the-materiality-madness.pdf>

Double Materiality & Implications for CSRD Reporting (greenomy.io)

가치사슬

지속가능성 공시는 가치사슬을 포함하고, 가치사슬은 업스트림(생산까지의 단계) 및 다운스트림(생산 이후 판매, 소비까지의 단계)을 망라한다. 지속가능성제표에는 가치사슬의 사업 관계에서 발생하거나 발생할 수 있는 중요한 영향, 위험 및 기회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사업 관계는 직접적인 계약 관계에 국한되지 않는다. 다만 모든 사항에 가치사슬 정보를 포함할 필요는 없으며, 사업 관계상 중요한 영향, 위험과 기회와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하면 된다.

가치사슬의 공시 대상 여부도 중요성 평가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가치사슬의 어느 부분(지역, 활동, 운영, 공급업체, 고객, 기타 관계 등)에서 중요한 지속가능성 사안이 있는지 파악해야 한다. 예를 들어 유럽의 소매회사가 역외 지역에서 생산된 목재 장난감을 파는 경우를 가정해보자. 역외 지역의 공장에서는 먼지와 화학물질로 산업안전에 심각한 위험이 있다. 이 회사는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고 산업안전법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 이 경우 협력회사 직원과 지역사회 주민에게 중대한 건강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영향 중요성). 아울러 해당 협력업체의 당국이 뇌물을 받지 않고 산업안전 관련 법을 강력히 집행하면 해당 협력업체는 벌금을 받거나 영업정지를 당할 수도 있다(재무 중요성). 그렇다면 중요성이 인정되며 공시의 대상이 된다.

유럽의 지속가능성 공시는 국제거래를 바꾸는 도화선

유럽의 지속가능성 공시는 무역과 국제거래를 변화시키는 도화선이다. 환경과 인권, 거버넌스가 무역거래의 주제로 들어오는 것이다. 지속가능성을 무시하는 기업은 국제거래에서 배제되는 시대가 되고 있다. 아동노동을 하는 동남아 국가에서 물건을 조달해 공급하거나, 환경 파괴를 통해 얻어진 원료를 가공해 수출을 하는 것은 앞으로 어려워질 것이다. 탄소배출이 높은 기업은 무역에서도 설자리가 없어질 것이다.

지속가능성 공시는 기업에 어떤 이점이 있을까? CSRD에서는 기업이 지속가능성 문제에 대하여 수준 높은 공시를 하면 여러 이점이 있다고 제시한다. 우선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투자 및 금융상품이 늘어나고 있어서 금융자본을 쉽게 조달하게 된다. 또한 지속가능성 공시는 기업이 지속가능성 문제와 관련된 위험과 기회를 파악하고 관리하는데 도움이 된다. 또한 기업과 이해관계자 사이의 더 나은 대화와 소통을 위한 기반을 제공할 수 있다. 기업의 평판을 개선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유럽이 앞서고 있지만,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SEC)도 지속가능성 공시를 의무화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ESG 공시를 2026년 이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있다. 공시는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이다. 이를 경쟁력을 높이는 기회로 활용하여야 한다.

[심층 브리핑] EU 역외보조금규정 최근 동향과 사례

민창욱 변호사, 강보원 연구원(지평 통상자문센터)

1. 들어가며

EU 역외보조금규정(이하 'EU FSR')이 2023년 7월 12일 시행된 이후 EU 집행위원회의 직권조사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4월 23일 중국 보안검색장비업체인 뉴텍의 네덜란드 지사와 폴란드 지사를 급습하여 EU FSR에 따른 직권조사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또한, 앞서 4월 9일 EU 집행위원회는 스페인, 그리스, 프랑스, 루마니아 및 불가리아에 위치한 중국 공급업체의 풍력 발전소에 대해 EU FSR에 따른 [첫 직권조사를 개시](#)하였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4월 3일에도 루마니아 태양광 발전 사업 공개입찰에 참가하는 중국 룽지뤼닝 및 중국 상하이전기에 대해 심층조사를 [개시](#)하였고, 2월 16일에는 불가리아 전동차 도입 사업 공개입찰에 참가하는 중국 중처쓰팡에 대해 심층조사를 [개시](#)하여 중처쓰팡이 입찰 참여를 [철회](#)하기도 하였습니다.

제3국 정부의 보조금으로 인한 EU 역내시장 왜곡을 바로잡기 위해 채택된 EU FSR은 주로 중국을 겨냥하여 집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청정에너지 전환에 핵심적인 산업 – [전기차, 태양광 발전, 풍력 발전, ICT](#) – 가 EU FSR 조사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EU 정부가 내세우는 환경 정책을 제대로 이행하기 위해서 중국에 대한 의존을 최소화하려는 EU 정부의 전략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 집행 동향에 맞춰 우리나라 기업들이 규제 컴플라이언스를 갖추어 EU 시장에 접근한다면 EU 정부 정책에 핵심적인 산업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비교경쟁력을 지닐 수 있을 것입니다.

2. EU FSR의 주요 내용

[EU FSR](#)은 2023년 1월 12일 발효되고 2023년 7월 12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EU FSR에 대한 [이행법률](#)(이하 '이행법률')은 2023년 7월 10일 채택되었습니다.

EU FSR은 세 가지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EU 집행위원회에 의한 직권조사(ex officio review)와 기업결합(concentration) 및 공공조달(public procurement)에 대한 규제 집행입니다.

가. 직권조사

EU FSR의 직권조사 대상은 [EU 내부시장을 왜곡하는 역외보조금](#)으로 의심되는 모든 거래(transaction)입니다. 직권조

사 대상에는 다음 항목에 설명된 사전신고 의무가 있는 기업결합 및 공공조달도 포함됩니다(공공조달의 경우, 직권조사는 낙찰된 계약에 한합니다).

EU FSR에서의 역외보조금(foreign subsidy)이란 제3국이 EU 내부시장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특정 기업에 직간접적으로 제공하고 해당 기업에 혜택을 부여하는 재정적 기여(financial contribution)를 의미합니다.

다음은 재정적 기여의 예시와 재정적 기여를 제공한 제3국으로 간주될 수 있는 주체를 정리한 표입니다:

역외보조금(foreign subsidy): 재정적 기여+제3국 제공+특정 기업에 혜택 부여	
재정적 기여(financial contribution) 예시	제3국으로 간주될 수 있는 주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금 또는 부채 이전(자본유입, 무상지원, 대출, 대출 보증, 재정적 인센티브, 영업손실 상쇄, 공공기관이 부과한 재정적 부담에 대한 보상, 부채 면제, 출자전환, 채무 재조정 등) ▪ 징수해야 할 세입의 포기(세금 면제, 적절한 보수를 받지 않고 부여하는 배타적 권리) ▪ 제품 또는 서비스의 제공 또는 구매 	<p>(EU 회원국이 아닌 역외 국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정부 및 기타 모든 공공기관 ▪ 행위가 제3국에 귀속될 수 있는 공공 단체 ▪ 행위가 제3국에 귀속될 수 있는 민간기관

(출처: [KOTRA 알기 쉬운 EU 통상정책 시리즈 EU 역외보조금 규정\(FSR\) Q&A](#))

다음은 EU 집행위원회가 역외보조금의 내부시장 왜곡 여부를 판단할 때 특히 고려하는 사항들과 내부시장을 왜곡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유형의 역외보조금을 열거한 표입니다:

내부시장 왜곡	
특히 고려되는 사항(indicators)	내부시장 왜곡 가능성 가장 높은 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외보조금의 금액 ▪ 역외보조금의 성격 ▪ 역외보조금을 받는 기업의 상황(규모, 해당 시장 상황, 산업부문 등) ▪ 내부시장에서의 해당 기업의 경제활동 수준과 진행 과정 ▪ 역외보조금의 목적 및 조건, 내부시장에서의 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기 기업(ailing undertaking: 보조금 없이는 중·단기적으로 폐업할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부여된 역외보조금 ▪ 무제한적 채무보증 형태의 역외보조금 ▪ OECD 공적지원수출신용 협약에 부합하지 않는 수출금융지원 ▪ 기업결합을 직접적으로 가능하게 한 역외보조금 ▪ 부당하게 유리한 입찰 조건을 만드는 역외보조금

EU 집행위원회는 내부시장을 왜곡하는 역외보조금으로 의심되는 재정적 기여를 발견하면 해당 거래에 대한 예비검토(preliminary review)를 개시합니다. 예비검토 중 EU 집행위원회는 검토 대상 기업에 정보를 요구하고 현장 조사를 실시할 권리가 있습니다. 검토 대상 사업장이 역외에 위치한 경우, EU 집행위원회는 해당 역외 국가에 공식적으로 통지하고 해당 국가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에 현장 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예비검토 후, EU 집행위원회는 심층조사 개시 또는 예비검토 종결 결정을 채택해야 합니다.

예비검토 결과, 내부시장을 왜곡하는 역외보조금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EU 집행위원회는 심층조사(in-depth investigation)를 개시해야 하며, 심층조사 중 EU 집행위원회는 예비검토 때와 같이 정보 요구 및 현장 조사 권한을 가집니다. 심층조사 후, EU 집행위원회는 다음 중 하나의 결정을 채택할 수 있으며, 심층조사 기간은 심층조사 개시일로부터 **18개월**입니다:

- 시정조치(redressive measure) 결정: 왜곡을 바로잡을 수 있는 시정조치 부과
- 확약(commitments) 결정: 조사 대상 기업이 왜곡을 바로잡기에 충분한 확약을 제시한 경우, 확약 수락
- 이의 없음(no objection) 결정: 해당 거래승인

EU 집행위원회는 조사 대상 역외보조금의 내부시장 왜곡으로 인한 부정적 효과와 역외보조금을 받은 경제활동으로 인한 긍정적 효과를 비교하는 균형평가(Balancing Test)를 수행하고, 균형평가 결과에 따라 시정조치 부과 또는 확약 수락 여부 · 성격 · 수준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다음의 경우 상기 결정을 취소하고 새로운 결정을 채택할 수 있습니다:

- 해당 기업이 시정조치 또는 확약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 기존 결정이 불충분하거나 부정확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를 기반으로 채택된 경우
- 시정조치 또는 확약이 효과적이지 않은 경우

검토 또는 조사 대상 기업이 고의 또는 과실로 불충분한 · 부정확한 ·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를 제공하거나 절차에 협조하지 않은 경우, 전년도 총 매출액의 최대 **1%의 벌금(fine)** 또는 지체된 각 영업일당 전년도 일일 평균 총 매출액의 최대 **5%의 이행과징금(periodic penalty payment)**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업이 확약 · 시정조치 · 임시조치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전년도 총 매출액의 최대 **10%의 벌금** 또는 미준수 일수당 전년도 일일 평균 총 매출액의 최대 **5%의 이행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나. 기업결합

EU FSR은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결합(concentration)에 사전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EU FSR에서의 기

업결합은 아래 세 가지를 포함합니다:

- 합병(merger): 두 개 이상의 독립된 기업 간 합병
- 인수(acquisition): 주식이나 자산 취득 · 계약 등을 통한 기업 인수
- 합작투자(joint venture): 합작투자회사 설립

신고의무 기준은 ① 합병 당사 기업 중 최소 하나의 기업 · 피인수 기업 · 합작투자회사가 EU 역내에 설립되었으며 EU 역내 총 매출액이 5억 유로 이상인 경우 ② 기업결합(계약체결 · 공개 입찰공고 · 지배지분 취득) 전 3년 동안 합병 당사 기업들 · 인수 기업 및 피인수 기업 · 합작투자회사를 설립하는 기업 및 합작투자회사가 역외국가들로부터 받은 합산된 총 재정적 기여가 5천만 유로를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다음은 기업결합의 사전신고 의무 기준을 정리한 표입니다:

(기업결합 전 3년 동안)	EU 역내총 매출액: 5억 유로	재정적 기여총 합계: 5천만 유로
합병(merger)	합병 당사 기업 중 최소 하나	합병 당사 기업 모두
인수(acquisition)	피인수 기업	인수 기업 및 피인수 기업 모두
합작투자(joint venture)	설립된 합작투자회사	합작투자회사 및 설립 기업 모두

기업결합의 사전신고 양식(이하 'FS-CO')은 이행법률 부속서 I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전신고 의무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되는 재정적 기여와 FS-CO에 보고해야 할 재정적 기여의 기준이 다르며 EU FSR 제5조 1항 (a)-(d) 해당 여부에 따라 재정적 기여가 따로 보고되어야 합니다. 또한, 필수 섹션(1-6, 8)이 완전히 정확하게 기재되어야 다음 절차가 진행됨으로 FS-CO 작성 시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U 집행위원회가 완전한 신고(complete notification)를 접수한 날의 다음 영업일부터 예비검토 기간(25 영업일)이 시작됩니다. 예비검토 기간 동안 기업결합의 이행이 보류되며, EU 집행위원회는 심층조사 개시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EU 집행위원회의 심층조사 개시 결정 없이 25 영업일이 지나면 해당 기업은 기업결합을 이행할 수 있습니다. 심층조사가 개시된 경우, 심층조사 기간은 90 영업일(연장 가능)입니다. 심층조사 기간 내에 EU 집행위원회는 확약 · 이의 없음 · 기업결합금지 결정을 채택해야 합니다.

기업이 고의 또는 과실로 사전신고에 부정확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를 제공한 경우, 전년도 총 매출액의 최대 1%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전신고 의무 대상 기업이 사전신고를 하지 않거나 이행보류 기간을 어기고 기업결합을 이행하거나 금지된 기업결합을 이행하거나 신고의무를 우회하거나 우회를 시도한 기업은 전년도 총 매출액의 최대 10%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공공조달

8

EU FSR은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공공조달 절차(public procurement procedure) 참가 기업에 사전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공공조달 절차 사전신고 의무 기준은 ①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공조달 가액이 2억 5천만 유로 이상인 경우** ② 참가 기업 · 자회사 · 모회사 · 공공조달 절차에 관련된 주요 하청업체 및 공급업체가 신고(또는 업데이트된 신고) 전 3년 동안 받은 각 역외국가별 총 재정적 기여가 **4백만 유로를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분할된 공공조달의 경우, 상기 조건을 충족하고 분할계약의 가치 또는 해당 절차의 모든 분할계약의 총 가치가 1억 2천 5백만 유로 이상인 경우 신고의무가 적용됩니다. 국방 및 보안 분야 · 예기치 못한 사건으로 인한 긴급상황 · 물, 에너지, 운송, 우편 서비스 부문 · 참가 기업에 의해서만 공급이 가능한 경우는 사전신고 의무에서 제외됩니다.

사전신고 의무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은 조달당국에 **사전신고(notification)**를 제출해야 하며, 상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기업은 제3국으로부터 수령한 모든 재정적 기여를 기재하고 기재된 재정적 기여가 사전신고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는 **선언서(declaration)**를 조달당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공개절차(open procedure)의 경우, 기업은 사전신고(또는 선언서)를 입찰서와 함께 한 번 제출하면 되고, 단계 절차(multi-stage procedure)의 경우, 기업은 참가신청서와 함께 사전신고(또는 선언서)를 제출하고 (최종)입찰서와 함께 업데이트된 사전신고(또는 선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전신고 또는 선언서를 받은 조달당국은 지체없이 EU 집행위원회에 사전신고 또는 선언서를 전달해야 합니다. 공공조달 절차 사전신고 양식(이하 '**FS-PP**')은 이행법률 부속서 II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완전한 신고(complete notification)를 접수한 날의 다음 영업일부터 **20영업일 동안 예비검토**를 수행해야 하며 기한 내에 심층조사 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심층조사 기간**은 완전한 신고 접수일의 다음 영업일부터 **110영업일**(연장 가능)입니다. 단계 절차의 경우, EU 집행위원회는 참가신청서와 함께 제출된 완전한 신고 접수일의 다음 영업일부터 20 영업일 동안 예비검토를 하고, 20 영업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예비검토가 보류됩니다. (최종)입찰서와 함께 제출된 업데이트된 신고 접수일부터 예비검토가 재개되고(기간: 20 영업일), EU 집행위원회가 심층조사 개시를 결정한 경우, 심층조사 기간은 업데이트된 완전한 신고 접수일부터 90 영업일입니다.

기업이 고의 또는 과실로 사전신고 또는 선언서에 부정확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를 제공한 경우, 전년도 총 매출액의 최대 **1%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본 규제에 따라 사전신고 또는 선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신고의무를 우회하거나 우회를 시도한 기업은 전년도 총 매출액의 최대 **10%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3. 최근 EU FSR 적용 사례

민감한 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로 인해, EU FSR은 규제 집행에 대한 공개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예비검토 단계까지의 자_9

료는 공개되지 않으며, EU FSR 제10조 3항에 따른 심층조사 개시 결정이 EU 관보에 게재됩니다. 현재까지 총 세 건의 심층조사 개시 결정이 EU 관보에 게재되었습니다.

가. 중처쓰팡 – 전동차 공공조달

2023년 9월 4일 불가리아 교통부는 가액 약 6억 유로의 전동차 도입 프로젝트 공개입찰 공고를 하였고, 2024년 1월 22일 EU 집행위원회는 중국 중처그룹의 자회사 중처쓰팡의 EU FSR에 따른 사전신고를 접수받았습니다. 중처쓰팡은 사전신고에 EU FSR 제5조(내부시장 왜곡 가능성)에 해당하는 재정적 기여를 보고하지 않았고, 4백만 유로 이상의 개별적인 재정적 기여를 받지 않았음을 주장했습니다(FS-PP Section 3 및 Table 1 참고). EU 집행위원회는 예비검토 결과 중처쓰팡이 EU 내부시장을 왜곡하는 역외보조금을 받았을 충분한 징후가 있다고 판단하여, 2024년 2월 16일 [심층조사 개시를 결정하였습니다](#). EU 집행위원회가 밝힌 중처쓰팡이 받은 EU 내부시장을 왜곡하는 역외보조금으로 의심되는 거래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75억 유로 이상의 공공조달 입찰계약 – 해당 공공조달 계약이 경쟁 시장 조건에 따라 낙찰되었다는 증거를 제공하지 못함
- 2023년 6월 30일 기준 이연수익으로 처리된 정부 보조금 총 8억 4천만 유로
- 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보조금 외 정부 보조금: 2020년 3.55억 유로, 2021년 3.01억 유로, 2022년 2.34억 유로, 2023년 상반기 5천 1백만 유로

심층조사 개시 결정 발표 후 6주만에 중처쓰팡이 입찰 참여를 철회하면서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나. 룽지뤼닝 및 에네보 그룹 – 태양광 발전 공공조달

2023년 9월 27일 루마니아 정부는 약 3.75억 유로 규모의 태양광 발전 사업 공개입찰 공고를 하였습니다. 루마니아 에네보 그룹과 중국 룽지뤼닝의 독일 자회사가 설립한 합작회사(이하 '에네보 컨소시엄')가 참가하였고, 2024년 1월 22일 조달 당국은 에네보 컨소시엄이 EU FSR에 따라 제출한 사전신고를 전달했습니다. 2024년 3월 4일 완전한 신고를 접수받은 EU 집행위원회는 예비검토를 수행하였고 2024년 4월 3일 [심층조사 개시를 결정하였습니다](#). 예비검토 결과, EU 집행위원회가 밝힌 에네보 컨소시엄이 받은 EU 내부시장을 왜곡하는 역외보조금으로 의심되는 거래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고 전 3년 동안 에네보 컨소시엄과 그 지주회사가 받은 정부 보조금
- 신고 전 3년 동안 에네보 컨소시엄과 그 지주회사가 받은 세금환급, 재정적 인센티브 등
- 신고 전 3년 동안 에네보 컨소시엄과 그 지주회사가 받은 자금조달

① 에네보 컨소시엄이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역외보조금의 절대 금액이 본 사건 입찰계약의 가치보다 상당히 높은 점 ② 10

의심되는 역외보조금에 대한 정보(성격, 조건, 목적, 사용)을 에네보 컨소시엄이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③ 중국 룽지뤼 네이 OECD 공적지원수출신용 협약에 부합하지 않는 수출금융지원을 받은 점에 비추어 보아, EU 집행위원회는 본 사건에 EU 내부시장을 왜곡하는 역외보조금이 연루되었다는 충분한 징후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심층조사 개시를 결정하였습니다.

다. 상하이전기 – 태양광 발전 공공조달

위 동일한 공개입찰(루마니아 태양광 발전 사업)에 중국 국영기업 상하이전기의 완전자회사인 상하이전기의 영국 자회사와 홍콩 자회사(이하 '상하이전기 컨소시엄')도 참가하였고, EU 집행위원회는 상하이전기 컨소시엄으로부터 완전한 신고를 접수한 2024년 3월 4일부터 예비검토를 수행했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위와 같이 2024년 4월 3일 상하이전기 컨소시엄에 대한 [심층조사 개시 결정](#)을 하였습니다. 예비검토 결과, EU 집행위원회가 밝힌 상하이전기 컨소시엄이 받은 EU 내부시장을 왜곡하는 역외보조금으로 의심되는 거래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고 전 3년 동안 상하이전기 컨소시엄과 그 지주회사가 받은 정부 보조금
- 신고 전 3년 동안 상하이전기 컨소시엄과 그 지주회사가 받은 세금환급, 재정적 인센티브 등 – 최소 3.89억 유로
- 신고 전 3년 동안 상하이전기 컨소시엄과 그 지주회사가 받은 자금조달
- 신고 전 3년 동안 상하이전기 컨소시엄과 그 지주회사가 최소 약 5.46억 유로의 상품 판매 및 서비스 제공을 할 수 있었던 점

① 상하이전기 컨소시엄이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역외보조금의 절대 금액이 본 사건 입찰계약의 가치보다 상당히 높은 점
 ② 의심되는 역외보조금에 대한 정보(성격, 조건, 목적, 사용)를 상하이전기 컨소시엄이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③ 상하이전기 그룹이 상하이전기 컨소시엄의 사업운영을 위해 제공한 재정적 지원 및 상하이전기 그룹의 해외 사업 손실 발생 특성 등에 비추어 보아, EU 집행위원회는 본 사건에 EU 내부시장을 왜곡하는 역외보조금이 연루되었다는 충분한 징후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심층조사 개시를 결정하였습니다.

4. 시사점

위 심층조사 개시 결정 세 건과 앞서 소개된 EU 집행위원회 직권조사 사례들에 비추어 보아 청정에너지 전환 등의 EU 정책 목표에 핵심적인 기술로 간주되는 분야 – 즉, 전기차, 태양광, 풍력 발전, ICT 기술 –에서 EU FSR 규제 집행이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그동안 정부 보조금을 통해 EU 역내시장 점유율을 높여왔던 중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규제가 집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맞춰, 첨단 기술 산업에서 활동하는 우리나라 기업들은 EU FSR 규제 내용을 확인하고 EU 통상규제에 관한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발간 소식] 지평 통상자문센터, “유럽연합의 새로운 통상규제에 대한 대응방안 연구” 보고서 발간(국회 정책연구용역보고서, 2024. 3.)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024년 3월 지평 통상자문센터가 작성한 “유럽연합의 새로운 통상규제에 대한 대응방안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이 정책연구용역보고서는 유럽연합이 최근 발표한 ‘ESG와 통상’ 관련 주요 규제 법안 6가지를 심층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지침(CSDDD) 최종안,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산림벌채 규정(EUDR), 배터리 규정, 핵심원자재법(CRMA) 최종안, 강제노동 금지 규정안의 입법 배경, 주요 내용, 대응 현황, 대응 방안을 담았습니다.

[다운로드]

- 정책연구용역보고서(유럽연합의 새로운 통상규제에 대한 대응방안 연구)

지평 통상자문센터 주요 업무

▪ 맞춤형 통상 정보제공

해당 기업의 산업분야 및 거래 국가와 관련된 통상규제 정보를 저렴한 비용에 제공. 특히 ESG 통상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유럽 및 미국의 통상규제 정보를 적시에 제공

▪ 통상이슈 자문 및 솔루션 컨설팅

구체적 통상이슈가 생긴 경우 자문 및 솔루션 제공. EU 공급망실사법, 탄소국경조정제도, 미국 IRA, 강제노동 규제 등 대상 여부 및 규제 정보 검토 및 대응방안 컨설팅

▪ 통상 컴플라이언스 구축 컨설팅

통상 리스크 예방, 식별, 대응을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에 통합하는 컨설팅 제공

관련 구성원



임성택 대표변호사



민창욱 변호사



이준희 경영컨설팅센터
센터장



정민 경영컨설팅센터 BI
그룹 그룹장



이주미 경영컨설팅센터
PL



강보원 연구원